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47
----------	-------

발의연월일 : 2025. 7. 30.

발 의 자 : 송재봉 · 조계원 · 강득구
서영교 · 최혁진 · 이재관
이병진 · 양부남 · 박지원
임미애 · 김문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원활한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 감시 대상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환경·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며, 그 재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호다목, 제2조제3호, 제25조의3,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폐기물처리업자”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의 소각 또는 매립을 업으로 하는 자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민감시)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을 통하여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자격 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제3항,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및 폐기물처리업자는”으로 한다.

제3장에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또는 신고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와 인접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절차·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의견 수렴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부담금(이하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및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③ 부담금, 가산금 및 연체이자의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6조의3에 따른 주변지역지원부담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 수익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u>
<u><신 설></u>	<u>3. “폐기물처리업자”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의 소각 또는 매립을 업으로 하는 자</u>
<u><신 설></u>	<u>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민감시)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을 통하여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u> <u>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자격</u>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등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제3항,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

제26조의2(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또는 신고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 설>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와 인접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절차·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의견 수렴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신 설>

위한 부담금(이하 “주변지역지
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
한까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및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③ 부담금, 가산금 및 연체이자
의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6조의4(주민지원사업 등의 실
시)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재원으로 민간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
득 향상, 복리 증진, 환경보전
및 피해대책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
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6조의3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부담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
의 운용 수익금